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7월부터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선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 전세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의 50%를 지급단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조문의 과세액이란 '세제곱미터(Nm³)당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으로,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세 정산 자료에 따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21.9.15.기준

| 구분 | 변경전(원/Nm ³) | 변경후(원/Nm ³) |
|------|-------------------------|-------------------------|
| 노선버스 | 64.83 | 65.30 |
| 전세버스 | 32.42 | 32.65 |

4. 이에 '21.9.15.부터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소관 운송사업자 및 충전소 등에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주)트라이언소프트, 신한카드(주), 국민카드(주), 우리카드(주)

주무관 **손주희** 시설사무관 **장형석** 버스정책과장 **장구중** 전결 2021. 9. 13.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118 (2021. 9. 1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5 팩스번호 044-201-5587 / malianr@molit.go.kr / 대국민 공개

함께 지킨 정령의식, 함께 누릴 국토교통